

등록번호	자치행정과-4183	주무관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2.22.	이현석	조중훈	최선희	김종두	02/22 대김종두	
결재일자	2016.2.22.	협 조					
공개구분	대시안공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공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력내용	협력결과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30,000천원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공모계획

관내의 새로운 주민 주체들이 초기단계의 주민모임을 형성하여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주민모임 형성사업(씨앗기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단위에서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실행사업단계로 성장 가능한 모임 발굴

I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6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 계획

III 추진 방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실시에 따른 신규 마을사업지기 발굴
-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가능함에 따라 지역 소모임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 지원(중전 : 지원규정 미적용)
- 현장 점검을 통한 상담 및 컨설팅으로 마을사업지기의 어려움 해결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통해 도심 속 공동체 회복
- 민선6기 추진 방향에 맞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

IV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 지원규모 : 30,000천원
- 지원목표 : 총 30건 내외
- 지원대상 : 초기단계의 마을공동체 주민 모임 및 활동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6. 8. 31.
- 신청자격 : 주소 또는 생활권이 서대문구인 주민 5인 이상의 신규 모임
- 사업장소 : 서대문구 행정구역 내
- 추진절차



V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공모개요

신청자격

- 서울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 서대문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며,
- 5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

☞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대표 제안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대표 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할 경우 동일한 주민모임으로 간주
-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참여자가 대표 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공모분야 : 자유 제안

-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임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모임의 활동
-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문화 조성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지원 제한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

구분	세부내용
단순 복지사업	일반적·수혜적 복지사업 (ex. 단순 도시락(반찬)배달, 김치전달 등)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하여 보조금(국·시·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일반 강좌 운영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일반 강좌 운영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일반 단순 및 영리모임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법인)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주민(마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단순모임에서 끝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지원내용

- 보조금 : 각 모임 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에 1,000천 원 이내 지원
 -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식비·다과비 등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등 수시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보조금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지원 등
- ※ 자부담 사업비 : 마을사업지기 자율편성 대상
 - 소액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사업비 10% 이상 조건 미적용
-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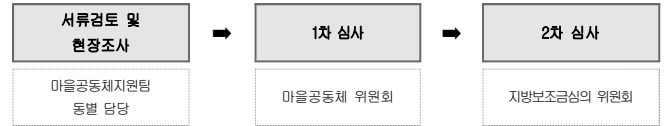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 회의참석비 등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 공고기간 : 2016. 2. 22.(월) ~ 3. 6.(일)
- 접수기간 : 2016. 2. 22.(월) ~ 3. 6.(일)
 - ※ 1차 접수 후 필요 시 별도 공모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사업 → 신청 및 접수

2.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절차



□ 심사선정 방법

- 제안서 검토 및 현장조사
- 1차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사업선정
 - ※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세부계획 별도수립 예정
- 2차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사
 - 보조사업비 교부 결정

□ 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내용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가
	공익성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마을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가
	지속가능성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비 산출이 적절하고 현실성 있는가
	실행가능성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 실현이 가능한가

※ 자부담 사업비 편성조건 미적용이나 자부담 사업비 편성 시 가정부여

□ 심사결과 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심사내용은 비공개)

□ 선정자 교육 (필수)

- 내용 :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등
- 대상 : 사업선정자

3.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협약체결 : 서대문구와 마을사업자간 체결

-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 사업비 교부

- 협약체결 후 선정사업자에게 사업비 교부
- 보조금 교부절차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제출기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내용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교육 및 컨설팅 참여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
- 2016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VI 추진일정

일정	내용
2016. 2. 22.(월) ~ 3. 6.(일)	사업 공고·접수
2016. 3월	부서 검토(현장조사)
2016. 3월	1차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2016. 4.21.(목)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선정)
2016. 5월	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제안서 수정·접수
2016. 5월	협약체결 및 선정 사업지기 회계교육
2016. 5월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일 ~ 2016. 8.31.(수)	사업시행
2016. 9월	사업 결과보고,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VII 사업예산

- 사업예산 : 총 30,000천원
- 출 처 : 서대문구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 (총 92,4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VIII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기획담당관
-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홍보 ————— 홍보과
-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발굴 및 현장조사 참관 ————— 동주민센터

- 붙임. 1.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공고문 (안) 1부.
2. 이웃만들기 사업신청 제출서류 1부.
3. 2016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등 1부. 끝.